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06 March 2017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Singapore Creates Safe Harbor for Intercompany Loans

싱가포르 과세 당국 관계사 간 자금 대차 거래(intercompany loan)에 관한 조사 면제 기준 조항(Safe Harbor Rule) 신설 (*Bloomberg BNA\_Vol25 No. 19*)

#### 조사 면제 기준 도입

조사 면제 기준이 도입되면 싱가포르 기업들은 관계사 간 자금 대차 거래 시 정부가 고시한 마진율을 적용할 경우 문서화 의무 면제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문서화 면제 조항은 기준 금리에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마진율을 반영하고, 금액이 1500 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인 관계사 간 자금 대차 거래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조항은 1 월 12 일자로 싱가포르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015 년 OECD 에서 합의한 BEPS Action Plan 상 신설된 권고안을 채택하고, 싱가포르 과세 당국(IRAS)은 이전 가격 문서화 의무에 따라 규제준수 및 행정에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사 면제 기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외부 자문사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면제 기준 조항에 부합하는 관계사 간 자금 거래는 문서화 의무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수관계자 간 대차거래 총액 집계

시에도 제외됩니다. 또한 2017년 기준, 2.5%의 정부 고시 마진율은 LIBOR 금리 또는 싱가포르 은행 간 여신 금리 등과 같은 기준 금리에 가산되게 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세자는 싱가포르 달러로 표시된 고정 금리 대차 거래에 대하여 싱가포르 국채 수익률을 기준 금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 [\*\*Hong Kong Transfer Pricing Update\*\*](#)

2016년 10월 26일 홍콩정부는 이전가격 규정 도입안 및 이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새로이 도입될 이전가격 규정 하에서 다수의 홍콩 소재 기업들은 특수관계자(이하 “특관자”)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전가격 문서 구비가 요구될 전망입니다.

홍콩 이전가격 도입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이전가격 문서 구비 의무는 **국외 특관자 거래**에 한하여 적용
2. 국내 특관자 거래 규정은 조세 회피에 관한 조항에 추가
3. 문서화 구비를 판단하는 중요성 기준이 너무 낮으며 소액 거래에 대한 문서화 의무 적용은 배제
4. 조사 면제 규정(Safe harbor rules)이 포함되어야 함
5. 이전가격 문서 구비가 의무화 될 경우, 가산세 면제 조항 추가해야 함

아직 홍콩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가격 법안에 반영할 지의 여부를 예측하기에는 이릅니다. 홍콩정부는 올해 이전가격 규정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초안이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사항**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시행중인 홍콩 세제에 대한 신뢰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홍콩 정부가 다음 사항을 재확인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이전가격 규정 적용 시, 홍콩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소득 금액은 기준의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홍콩이 원천지국인 경우에 한하여 홍콩 과세 소득으로 분류

2 이전가격 규정이 소득의 원천지국 결정 기준이 되지 않음

[Back to top](#)

**Companies Root for IRS In Race on Tax Data Exchange  
(Bloomberg BNA\_Vol25 No.19)**

**미국 국세청 납세자 정보 교환을 위한 정부간 합의 가속화**

미국 국세청(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은 납세자 정보 교환을 실행하고자 90 여 개국과 권한 있는 당국간의 협약(QCAAs)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정보 교환 관련한 협약은 미국 다국적 기업이 2016년 전세계 납부 세액 및 수익을 현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IRS에 제출하여 이후 현지 과세 당국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OECD 규정**

OECD 행동 지침에 따라 다국적 그룹의 최종 모기업은 전체 그룹을 대신하여 해당 최종 모회사의 거주지국 세무 당국에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회사의 조세 관할 구역과 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룹의 자회사가 해당 조세 관할 구역의 세무 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1. 각국과의 협상이 제출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으며, 2016년 국가별 보고서의 경우 일부 현지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국가의 제출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기에 그 전에 일부 협정은 타결될 것으로 예측
2. Surrogate filing:  
납세자가 네덜란드와 같이 미국보다 광범위한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가에 계열사를 두고 있을 경우, 네덜란드 과세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네덜란드 과세 당국에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과 국가별 보고서를 공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자 신고 기한**

미국은 국가 별 보고서 제출 의무자 사전 신고를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보고서 신고 기한을 법인세 신고 기한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발효 일이 연기되어 2016년 6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연도부터 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QCAA(Qualified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모델**

조세 전문가들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IRS 가 권한 있는 당국간의 협약 (QCAA; 쌍방 협약)을 적시에 타결하는 것이 중요며, QCAA 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보고서 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RS 가 제안한 QCAA 모델에는 보고서 수취 국가가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이전가격과 BEPS 위험 평가 및 통계 분석에 한하여 보고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특별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Back to top](#)

#### **Russia, Four More Countries Sign Multilateral Pact on Country Reporting**

**러시아 및 4 개국 국가별 보고 다자간 협정 추가 서명 (Bloomberg BNA\_Vol25 No.19)**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금 및 이익을 보고하는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 교환 협정의 진척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7일 성명서에서 가봉, 인도네시아, 몰타, 모리셔스 및 러시아는 BEPS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논의하는 제 2 차 회의의례에서 국가별 보고서 자동 교환을 위하여 다자간 협정(MCAA)에 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0월에 서명한 리투아니아 및 12월에 서명한 헝가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7개 국가 및 조세 관할 구역이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BEPS Action 13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수익 및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무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각국은 기업의 제출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간 정보 자동 교환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 **BEPS 최소 요건**

OECD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근거하여 국가별 보고서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교환” 활성화 방안을 적절한 시점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보고 기준은 작년 G20에서 위임 받아 OECD가 수립한 이행체계에 참여하기 위해 각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네 가지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중 하나로써, BEPS 프로젝트의 결과 마련된 대응 조치를 각 국가가 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행체계에는 현재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OECD는 향후 각국의 이전 가격 규정 정비, 유해한 조세 관행에 대한 BEPS 조치, 조약 남용 방지 및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회원국에 의한 상호 합의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최소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kpmg.com/app)

